

간병비(제21조 관련)

간병 필요등급 간병인	간병 1등급	간병 2등급	간병 3등급	간병 4등급
전문 간병인	67,140원	55,950원	44,760원	미지급
가족, 전문 간병인 외의 간병인	61,750원	51,460원	41,170원	미지급

비고

- 간병 필요등급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59조제1항에 따른다.
- 전문 간병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「간호법」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조사 등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.